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8. 8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3직급

소속 : 가동원전사업처

[상담 내용]

긴급 하도급 발주를 위해 발주정보를 해당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

[상담 결과]

- 발주정보가 아직 공개되기 전인 미공개 정보 또는 비밀인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관련 업체에게 알려 미리 입찰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을 얻게 한 경우,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. 또한,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,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,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
- 또한,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재정적 이익을 얻은 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

[확 인] 2023. 8. 8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8. 21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3직급

소속 : 원자력총괄기술처

[상담 내용]

발전소 기재재 납품 적격업체 등 계약 적격업체 판정을 위한 입찰서 기술평가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?

[상담 결과]

□ 해당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공사·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·구매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 직무에 해당할 것임

[확 인] 2023. 8. 21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8. 3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4직급

소속 : 품질경영처

[상담 내용]

협력업체 품질감사 시, 기관 퇴직자가 협력업체에서 관련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,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지?

[상담 결과]

- 해당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·감독에 관계되는 직무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 직무에 해당되며, 해당 퇴직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상담요청자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라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

[확 인] 2023. 8. 30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9. 12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2직급

소속 : 원자력총괄기술처

[상담 내용]

A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술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가도 되는지?

[상담 결과]

- 외부강의등 제한 여부 판단 기준은 전사 게시되어 있는 '외부강의등세부내용신고서 매뉴얼'에 따라 아래와 같음
 - 가.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 - 나.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 - 다. 회사의 기능 수행 및 업무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
 - 라. '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'으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
 - 마. 요청 공문서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작성 신고하지 않은 경우
 - 바. 외부강의등 내용이 회사의 기밀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경우
- 특히, 기술업무 관련 외부강의인 경우, '바. 외부강의등 내용이 회사의 기밀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경우'에 해당되는지 주의가 필요할 것임

[확 인] 2023. 9. 12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9. 13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3직급

소속 : 구조부지기술실

[상담 내용]

A업체랑 과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었는데, 추후 동일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매번 징구해야 하는지?

[상담 결과]

□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모든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징구해야 하나, 고위공직자와 계약담당자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직자가 변동되지 않았을 경우, 동일업체에 대해 반복해서 확인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임. 다만, 현재 계약규정 상 이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고, 고위공직자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직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할 경우,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복해서 징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음

[확 인] 2023. 9. 13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